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8. 9. 6. 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8년 8월 28일
- 회부일자: 2018년 8월 31일

3. 개정이유

학교신설 등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고, 분야별 외부 전문가 도입으로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(개정안 제2조)
 - 지방공무원 총수: 3,175명 → 3,235명 (60명 증원)
-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개정(개정안 제3조제1항, 별표1)
 - 일반직: 99.8% 이상 → 99.7% 이상
 - 별정직·정무직: 0.2% 이내 → 0.3% 이내
-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개정안 제4조, 별표3)
 - 일반직: 2,908명 → 2,944명 (5급 이하 36명 증원)
 - 교육전문직원: 251명 → 271명 (5급상당 이하 20명 증원)
 - 별정직: 3명 → 7명 (4급 상당 1명, 5급 상당 이하 3명 증원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신설 및 행정직원 단독배치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일반직의 증원과 유아교육, SW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와 기관별 인력확충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증원, 교육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임용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임.

- 충청북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,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의 과도한 증원에 대한 외부의 반대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,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도 교육부의 2018년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는 적절한 정원책정이라 판단됨.

- 다만, 학생수 감소, 교육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비대화 보다는 외부기관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사무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기관의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정원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